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규(1)

-제품품질법(산품질량법)-

1993. 2. 22.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 채택, 1993. 9. 1. 시행

2000. 7. 8.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회 회의수정, 2000. 9.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품의 품질에 대한감독관리를강화하고제품의 품질수준을향상시키며,제품의 품질책임을명확히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고,사회경제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본법을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①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제품의제조및판매활동을하는경우에는본법을준수하여야한다.

②본법에서제품이라함은가공제조를거쳐판매에제공된제품을말한다.

③건설공사에는본법을적용하지않는다.다만건설공사에사용되는건축자재,건축부재·부품및설비에대하여는전항에서규정하는제품의범위에속하는경우본법의규정을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제도)제조자및판매자는건전한내부제품품질관리제도를두어부서의품질규범,품질책임및적절한심사방법을엄격히실시하지않으면안된다.

제4조(제품품질책임)제조자,판매자는본법의규정에의하여제품품질책임을진다.

제5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인정표지 등의 품질표시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한다.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하는 것, 타인의 공장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제조,판매하는 제품에 잡물을 혼입하거나 가짜를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위조하고, 열등품을 우량품으로 속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품질관리의 장려 및 표창)①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기준, 국가기준 및 국제적 기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②제품의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나아가 제품품질이 국제적 인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적이 현저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한다.

제7조(인민정부의 업무)각급의 인민정부는 제품품질의 향상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넣어 제품품질업무에 대한 통일기획 및 수배·지도를 강화하고 제조자 및 판매자가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제품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과 함께 감독하고, 각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법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본법의 시행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제품품질감독책임)①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전국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주관한다.국무원의 관련부문은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담당한다.

②현급 이상의 지방제품품질감독부문은 해당행정구역 내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주관한다.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부문은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담당한다.

③제품품질감독부문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실시한다.

제9조(감독부문 직원의 책임)①각급 인민정부의 직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직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사리를 취하거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지역 및 해당 계통 내에서 발생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해서는 아니 되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해지는 조사처분에 대하여 방해,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그 주요한 책임자에 대해

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고발) ①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품품질감독부문 및 관련부문은 고발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고 나아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규정에 기하여 표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1조(합격제품의 배척 금지)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해당지구 외 또는 해당계통외의 기업이 제조한 품질합격제품의 해당지구 및 해당계통에의 진입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제12조(품질검사) 제품의 품질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또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속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품의 안전보증의무) ①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공업제품은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증하는 국가기준 및 업계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국가기준 및 업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합치할 것을 요한다.

②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의 요구에 합치하지 않는 공업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관리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4조(기업의 품질체계 및 제품품질의 인정) ①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품질관리기준에 기초하여 기업의 품질체계인정제도를 보급시킨다. 기업은 자유의사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가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수권한 부문이 인가한 인정기관에 대하여 기업품질체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에 합격한 경우, 인정기관이 기업품질체계인정증서를 교부한다.

② 국가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제품품질기준 및 기술상의 요구를 참고하여 제품품질인정제도를 보급시킨다. 기업은 자유의사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가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수권한 부문이 인가한 인정기관에 대하여 제품품질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에 합격한 경우, 인정기관이 제품품질인정증서를 교부하고, 기업이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품질인정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15조(감독검사제도) ① 국가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발취검사를 주요한 방법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업제품 및 소비자 및 관련단체로부터 품질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발취검사를 실시한다. 발취검사의 샘플은 시장 또는 기업의 완성품창고내의 판매 전 제품으로부터 무작위추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감독 발취검사업무는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기획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제품품질감독부문은 해당행정구역 내에 있어서 감독 발취검사를 할 수 있다. 법률에 제품품질의 감독검사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가 감독 발취검사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지방은 별도 중복하여 발취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의 부문이 감독 발취검사를 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하급의 부문은 별도 중복하여 발취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독 발취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추출 샘플을 검사하는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피검사인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징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감독 발취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기하여 지출한다.

④ 제조자, 판매자는 발취검사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 발취검사를 실시한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그 상급의 제품품질감독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검사를 수리한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재검사의 결론을 내린다.

제16조(감독 검사를 받을 의무) 법에 기하여 행해지는 제품품질의 감독검사에 대하여 제조자 및 판매자는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품질 불합격) ① 본법의 규정에 기하여 감독 발취검사를 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감독 발취검사를 실시한 제품품질감독부문은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공고를 한다. 공고 후에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역시 불합격한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

PL 정보

을 명한다. 시정기한을 초과한 후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역시 불합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② 감독발취검사가 행해진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본법 제5장의 관련규정에 기하여 처벌한다.

제18조(제품품질감독부문의 직권) ① 현급 이상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에 기하여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분을 할 경우 이하에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본법에 위반되는 제조, 판매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기타의 관련 인원에 대하여 본법에 위반되는 의심이 있는 제조, 판매활동에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질문한다.

3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계약, 인보이스, 장부와 함께 기타 자료를 열람·복제한다.

4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근거가 있는 제품 또는 기타의 중대한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제품, 해당제품의 제조·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보조재료, 포장물, 제조용구에 대하여 봉인하고 압류할 수 있다.

②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의 범위에 기하여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분을 할 때에 전항에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제품품질검사기관)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적절한 검사조건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문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후 제품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제품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른다.

제20조(검사, 인정기관의 독립성) 제품품질의 검사, 인정을 행하는 사회중개기관은 법에 기하여 설립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행정기관 및 기타의 국가기관과의 사이에 종속관계 또는 기타의 이익관계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검사결과, 인정증명의 발행 및 인정 후의 추적조사) ① 제품품질의 검사기관 및 인정기관은 법에 따른 관련기준에 기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검사결과 또는 인정증명을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제품품질의 인정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기하여 인정표지의 사용이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인정 후의 추적조사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한다. 정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인정표지를 사용할 자격을 취소한다.

제22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문제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고, 제품품질감독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신청을 수리한 부문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3조(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보고가 있는 제품의 품질문제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소비자가 제품품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품질상황의 공고) 국무원 및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그 감독·발취검사를 한 제품의 품질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5조(제품경영활동에의 관여금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국가기관과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제조자의 제품을 사회에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대하여 제조감독, 판매감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경영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조사,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1절 제조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26조(제조품질에 대한 요구) ① 제조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제품의 품질은 이하에 규정하는 요구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인신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합치할 것을 요한다.

2 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할 것. 다만 제품에 사용성능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명기한 제품기준에 합치하고 제품 설명, 실물견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명한 품질의 상황에 합치할 것.

제27조(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지) ① 제품 또는 그 포장상의 표지는 진실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하의 요구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1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이 있을 것
 - 2 중국어로 표시한 제품의 명칭, 제조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가 있을 것
 - 3 제품의 특징 및 사용상의 요구에 기한 제품의 규격, 등급, 함유된 주요성분의 명칭, 함유량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중국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시할 것.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외부포장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4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 및 안전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5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쉽게 제품 자체가 파손되거나 인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경고표시 또는 중국어에 의한 경고설명이 있을 것을 요한다.
- ② 포장하지 않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의 특성에 의해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여 포장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표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위험물품의 포장 및 경고표시) 파손되기 쉬운 물건, 가연물, 폭발물, 독성을 가진 물건, 부식성을 가진 물건, 방사성 물질 등의 위험물품 및 저장·운송 중에 뒤집어지지 않는 등 기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포장의 품질은 적절한 요구에 합치할 것을 요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기하여 경고표시 또는 중국어에 의한 경고설명을 하고 저장·운송상의 주의사항을 명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9조(제조금지제품) 제조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생산금지를 명한 제품을 생산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의 금지) 제조자는 원산지를 속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허위의 품질표시 금지) 제조자는 인정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규격유지의무, 부정표시의 금지) 제조자는 제품의 제조

에 있어서 이물질이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혼입해서는 아니 되며,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을 우량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 및 의무

제33조(공급품의 검수제도) 판매자는 공급품의 검사검수제도를 실행하고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의 표시를 검사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4조(제품품질 보장의무) 판매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

출처: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상권) 중에서, 중소기업청, 2008년